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09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경현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521,809원 및 그 중 178,343,475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7. 1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D은행(동광양 지점) 및 E은행(연향동 지점)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시한 후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 체결일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변경)
1	2013. 8. 9.	F	D은행	2014. 8. 8. (2020. 7. 31.)	90,000,000원 (85,000,000원)
2	2014. 9. 30.	G	E은행	2015. 9. 29. (2020. 7. 31.)	100,000,000원
3	2016. 9. 12.	H	D은행	2017. 9. 11. (2020. 7. 31.)	108,000,000원 (89,25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체결

1) 피고 B와 피고 C은 1993.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9. 7. 10.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호협622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9.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D은행에 대하여 2019. 9. 10.자로, E은행에 대하여 2019. 9. 18.자로 각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2020. 2. 10.경 D은행에게 178,584,867원(= 대출원금 174,250,000원 + 이자 4,334,8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0. 3. 10.경 E은행에게 102,297,684원(= 대출원금 100,000,000원 + 이자 2,297,68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해 각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21. 1. 21.경 피고 회사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108,581,00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 중 102,297,684원은 E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221,026원은 D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구상금 채권액은 총 185,521,809원(= D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 178,343,475원 + 확정손해금 7,149,134원 + 대지급금 29,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E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해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521,809원 및 그 중 원금 178,343,475원에 대하여 원고의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2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4.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34,673,459원을 추가 배당받았으므로 그 상당액이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34,673,45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위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2. 28.자 2007마274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위 배당금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혼인중의 재산으로 이미 순천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까지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혼인중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재산분할약정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액배상).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13. 8. 9., 2014. 9. 30. 및 2016. 9. 12.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일인 2019. 7. 10.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9. 10.과 2019. 9. 1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 2. 10. D은행에, 2020. 3. 10. E은행에 각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C은 1993. 1. 5. 피고 B와 혼인한 후, 2019. 7. 10. 협의이혼에 이를 때까지 약 26년간 아들 2명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 C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터 피고 B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들 2명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는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내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약 127,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 C은 2019.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8. 21. 위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이 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마련을 위해 부담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4.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고 C은 피고 B와 이미 별거 생활을 하던 중 개인적으로 마련해 두었던 자금과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별지

목 록

[집합건물] 경기도 파주시 외 2필지 제비층 호

경기도 파주시 , ,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주택

지층 246.78㎡

일층 246.78㎡

이층 246.78㎡

삼층 246.78㎡

사층 206.28㎡

옥탑 28.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전1) 1. 경기도 파주군 전 337㎡

2. 경기도 파주군 전 341㎡

3. 경기도 파주군 구거 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전1) 제비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0.50㎡

(대지권의 표시)

1(전1) 1,2,3 소유권대지권 716분의 27.5

